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(이촌1동 302-75) [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김선우 [6576] 대리 고영옥 [6573]/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4105호

시행일자 2017. 8. 3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40호(2017. 8. 3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33호, 2017.7.25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주요 내용]

○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" 중 신설 (별지 1)

* (주요내용) 캐싸일라 주

○ 시행일: 2017. 8. 3

붙임: 개정고시 전문, 급여목록표 개정안 각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